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05호

2020.9.2.(수)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257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0-25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20-257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자치법규**[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57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입장료나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한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38, 팩스: 02-2133-1080, 이메일: bobos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5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전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정책과(전화: 02)2133-2757, 팩스: 02)2133-1057, 이메일:kairos@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57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133-1430, 팩스: 02-2133-1430, 이메일: sweet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